

2005. 9. 15(목)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5. 9. 2.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5. 9. 5.
다. 상정일자 : 2005. 9. 12.(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홍순민)

가. 제안이유

본 계획안은 하소동 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 기반시설 정비로 폐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치 : 제천시 하소동 212번지 일원(제천경찰서 옆)
- 지구면적 : 63,448m²
- 사업비 : 3,840백만원(국비: 1,920 · 도비 384 · 시비 1,536)
- 사업기간 : 2005. 1 ~ 2007. 12
- 개선계획시설 : 도로 11건, 주차장 3건
- 추진경위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결정 : 1999. 4. 23.

충북도 공고 제121호

○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취소 : 2001. 5. 4.

○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6. 15

~ 사업개요 설명(참석자 : 김내영외 30여명)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7. 18
 - 주민수렴(안)과 우리시의 의견토론후 기본계획안 도출
(참석자 : 김내영외 20여명)
- 3차 주민 설명회 개최 : 2005. 8. 26
 - 소로3-000(가칭)도로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개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총동수)

< 法的檢討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行政的檢討 >

-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3회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10월 11일에 결정된 주거환경개선 최종계획안을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
-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폐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설치는 적정한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을 살펴보면
 - 기정 소로 2-306의 도로가 없어진 사유
 - 기정 소로 3-355의 도로가 기존 6m폭에서 12m폭으로 확장된 사유
 - 주차장 3곳에 대한 필요성여부 및 규모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도로의 필요성
 - 변경도면 나 소로 3-00 가 필요한 사유, 도로 편입면적 및 보상비, 종단구배의 문제점, 교차로 및 결빙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등
 - 기정 소로 2-306 도로의 폐지로 인한 변경도면 다 소로 2-306 도로가 필요한지, 위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사고가능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기존 소로 2-306의 기존도로가 없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최창규의원)
- 기존 3-358의 도로가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최창규의원)
- 주차장설치가 주민의견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최창규의원)

나. 답변요지

< 건축과장 홍순민 >

- 이 노선은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 왼편으로 코아루 2차 아파트가 공사중이며 경계에 암반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임. 실제 이 지형상 높이 고저차가 상당히 높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하소신당개 지구를 진출입할 수 있는 노선은 불가능함.
- 이 노선은 현재에 실질적으로 마을을 진출입하는 주도로가 되겠음. 기존에 6m가 결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간선도로의 기능을 할려면 12m에 대한 최소 폭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된 부분이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장 검토를하게 된 것임. 예산은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38억이 소요되는데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부분은 가능할 것임.
- 공공용지로 표시되어 부근에 주차장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부합이 되는 것임.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내용

“ 없 음 ”

8.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안 1부. 끝.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안

하소동 신당개지구의 주거환경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함

【 의견청취사유 】

하소동 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임.

【 검토의견 】

-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주차장, 공원등의 주민편의 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중
 -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변경도면 나 소로 3-00, 변경도면 다 소로 2-306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필요성, 도로의 위험성, 예산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기 바람.